

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4 ~ 3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4. 4. 30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거창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진입제한을 완화,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규정을 구체화함(안 제6조후단)

○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준용

나.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2조, 제3조, 제7조)

○ 「관광진흥법」 제50조제1항 및 제3항, 제52조제1항

⇒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 및 제4항, 제54조제1항

○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5호 ⇒ 제3조제16호

○ 매년 실시하는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부담을 완화함

다.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함

○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

○ 규정에 의하여(의한) ⇒ 에 따라(따른)

라.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함(안 별표)

마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(안 별지 제2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17조, 제18조, 제21조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의견반영(과태료 부과기준 완화)
 -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
 - 당초 : 1차 50, 2차 100, 3차 200만원
 - 수정 : 1차 40, 2차 80, 3차 120만원
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4. 4. 10. ~ 4. 30.
 - (나) 예고방법 : 의견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중화장실등”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간이화장실·유료화장실을 말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의 1”을 “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 다중이”를 “그 밖에 많은 사람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승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
2. 법 제3조제16호 및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

제4조 중 “공중화장실 등”을 “공중화장실등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,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

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”로 “연간”을 “3년마다 1회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, 제15조제2항제4호, 제17조제1호·제2호, 제18조 본문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, 제16조제2항, 제17조제1호·제2호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, 제16조제1항 본문, 제17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7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별표 1”을 “별표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표로 하고, 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같은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및 같은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중화장실 등”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유료화장실(이하 “공중화장실 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중화장실 등”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간이화장실·유료화장실을 말한다.</p>
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.</p> <p>1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·승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</p> <p>2. 법 제3조제15호규정 및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</p> <p>3.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영 제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</p> <p>1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승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</p> <p>2. 법 제3조제16호 및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</p> <p>3. 그 밖에 많은 사람이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<u>공중화장실</u>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<u>공중화장실</u>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<u>공중화장실</u> 등-----<u>공중화장실</u> 등-----</p>
<p>제5조(설치기준) 영 제6조 별표 규정에 <u>서</u> 정한 시설 이외의 <u>공중화장실</u>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</p>	<p>제5조(설치기준)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<u>공중화장실</u>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탁관리 등) ① 군수가 설치한 <u>공중화장실</u>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유지·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위탁관리 등) ① ----- <u>이 경우,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</u> 등은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② -----에 따라----- -----범위-----</p>
<p>제7조(관리인의 교육) ① 군수는 <u>규칙 제6조의 규정에</u> 의하여 <u>공중화장실</u> 관리인(이하 "관리인"이라 한다)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<u>연간</u>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<u>제1항의 규정에</u> 의한 교육을 군수가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<u>화장실</u>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관리인의 교육) ① -----「<u>공중화장실</u>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----- -----3년마다 1회이상----- ② <u>제1항에</u> 따른-----</p>

현행	개정안
제10조(관리대장의 비치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<u>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</u>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·관리상황과 정비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	제10조(관리대장의 비치) ----- ----- <u>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</u> ----- -----
제11조(화장실의 개방) ① (생략)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.	제11조(화장실의 개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
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군수는 <u>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</u>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	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----- ----- <u>에 따른</u> ----- ----- ②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
제13조(편의·위생용품의 지원)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<u>범위 안</u> 에서 편의·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	제13조(편의·위생용품의 지원)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
제15조(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) ① <u>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 1. ~ 4. (생략)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<u>제8조의 규정에 의한</u> 편의용품을 비치·제공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15조(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) ① ----- <u>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각 호</u>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에 따른</u>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1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.
- 나.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,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.
- 다.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 반 사 항	근거조항	부 과 금 액		
		1차	2차	3차
1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	법 제21조제1항	40	80	120
2.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	법 제21조제2항1호			
가.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		20	40	60
나.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		10	20	30
3.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·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21조제2항2호			
가.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		10	20	30
나. 법 제11조제4항 설치·관리기준 위반		20	30	40
4.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1조제2항3호	20	40	60
가. 법 제7조,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		20	40	60
나.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		10	20	30
5.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	법 제21조제2항4호	10	20	30
6.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	법 제21조제3항	5	10	20

※ 비고 : “법”이란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을 말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유료화장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고서							처리기간					
							3일					
신청인	상 호(명칭)									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							
	주 소											
시설현황	소재지		관리주체									
	관리인		(전화번호 :)		설치연도							
	규모		부지 : m ² , 화장실 면적 : m ²									
시설내역	시설내역		대변기 수		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	
			남자용	여자용	장애인용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		서양식		
	편의시설		세면기	에어타올 (페이퍼타올)		환풍기	화장지		비누		방향제	
							유	무	유	무	유	무
1회 사용료		원										
「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.												
신고인 :					(날인 또는 서명)							
거창군수 귀하												
구비서류 1. 화장실 내부 평면도 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.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									수수료			
									없음			